

제2542호
2017. 10. 1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7-8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
제2017-8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
제2017-90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
제2017-91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9
● 공 고	
제2017-717호 :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 공람공고	11
제2017-718호 : 양동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 공람공고	27
제2017-723호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44
제2017-72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중구 서소문로 89-20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중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가.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168세대)

2.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사업주체의 성명 : (주)수경하우징 대표 이서준

나. 사업주체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67, 3층 다나빌딩

3. 사업시행 위치 및 개요(변경내용 포함)

가. 대지위치 : 중구 서소문로 89-20(정동 34-7호 외 4필지)

나. 대지면적 : 2,432.1㎡

다. 규 모 : 지하5층/ 지상9층, 연면적 15,481.6514㎡

라. 용 도 :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168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마. 구 조 : 철근 콘크리트구조

바. 변경내용

- 지하3층 운동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 연면적 3.68㎡ 감소

4. 주택건설사업 시행기간 : 2017. 12월 ~ 2019. 12월

5.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 관련내용은 중구 건축과에 비치 보관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6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6	2017.10.18. 2010.06.30.	을지로19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을지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2-23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다길 37	2017.10.18. 2010.06.30.	다산로42다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9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9가길 11 외 163건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가길11	2017.10.18	건물철거 및 말소	세운6-3-1,2구역내
2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가길13			
3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가길15			
4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가길3			
5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가길3-1			
6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가길5			
7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가길7			
8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가길9			
9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가길9-1			
10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길23			
11	서울특별시중구마른대로9길24			
12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68			
13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0			
14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0-1			
1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2			
1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2-1			
17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4			
18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4-1			
19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			
20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10			
21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12			
22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13			
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6-14			
24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15			
2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17			
2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19	2017.10.18	건물철거 및 말소	세운6-3-1,2구역내
27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20			
28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21			
29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22			
30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24			
31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26			
32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3			
33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31			
34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4			
3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5			
3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6			
37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6-9			
38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0길39			
39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0길39-22			
40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0길39-24			
41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0길39-26			
42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0길39-28			
43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0길39-32			
44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0길39-36			
4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2길15-11			
4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11			
47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13			

48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15			
49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17			
5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길 19			
51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19-1	2017.10.18	건물철거 및 말소	세운6-3-1,2구역내
52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20			
53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20-1			
54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20-2			
5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21			
5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27			
57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33-1			
58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33-3			
59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35			
6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길 37			
61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			
62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1			
63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10			
64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12			
6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14			
6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16			
67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18			
68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20			
69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3			
70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4			
71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5			
72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5-8			
73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7	2017.10.18	건물철거 및 말소	세운6-3-1,2구역내
74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4길9			
75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37-1			
76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39			
77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39-1			
78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39-3			
79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39-4			
80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39-7			
81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41	2017.10.18	건물철거 및 말소	신당11구역내
82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41-1			
83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43			
84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45			
85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9			
86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8			
87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7			
88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6-9			
89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6-7			
90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6-5			

91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6-3			
92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6-1			
93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23			
94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20-1			
95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20			
96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9			
97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8			
98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6			
99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5			
100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8길 14			
101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3	2017.10.18	건물철거 및 말소	신당11구역내
102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2-8			
103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2-7			
104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2-6			
105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2-5			
106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2-4			
107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2-3			
108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2-2			
109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2			
110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1-8			
111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1-7			
112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1-6			
113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1-5			
114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1-4			
115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1-2			
116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1			
117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8길10			
118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6길23			
119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6길21			
120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6길19			
121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6길12-9			
122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9-6			
123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9-12			
124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9-10			
125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8-4	2017.10.18	건물철거 및 말소	신당11구역내
126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8-3			
127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8-2			
128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8			
129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6			
130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27			
131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26			
132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25			

133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22			
134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2-1			
135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20			
136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0길 2			
137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8			
138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0길 17			
139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6-7			
140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6-5			
141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6-4			
142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6-3			
143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6-2			
144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6-1			
145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6			
146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5			
147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4			
148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3			
149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9			
150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0길 12-8			
151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7	2017.10.18	건물철거 및 말소	신당11구역내
152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6			
153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5			
154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4			
155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3			
156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21			
157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2			
158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19			
159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17			
160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12			
161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0길 12-10			
162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2			
163	서울특별시중구난계로10길10			
164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4길 16	2017.10.18	건물철거	

●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7-91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인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465	551662.39	200583.48	451356.56	200512.60	중구 광희동1가 203번지
9466	551645.45	200658.34	451339.61	200587.46	중구 광희동2가 328번지
9467	551776.03	200864.22	451470.19	200793.34	중구 을지로7가 9-19번지
9468	551722.39	200960.04	451416.56	200889.16	중구신당동225-2번지
9469	551739.16	201385.18	451433.33	201314.30	중구무학동11-2번지
9470	551638.20	201371.00	451332.37	201300.12	중구 무학동 43번지
9471	551232.54	201152.05	450926.71	201081.16	중구신당동304-746번지
9472	551179.95	201226.77	450874.12	201155.89	중구 신당동 294-40번지
9473	551673.22	200556.53	451367.39	200485.66	중구 광희동1가 188-4
9474	551720.19	200569.94	451414.36	200499.07	중구 광희동1가 187-2번지
9475	551782.16	200578.60	451476.32	200507.73	중구 광희동1가 144-4번지
9476	551758.34	200650.68	451452.49	200579.80	중구 을지로6가 20-20번지
9477	551743.56	200679.50	451437.71	200608.62	중구 을지로7가 134-5번지
9478	551800.76	200696.66	451494.91	200625.78	중구 을지로7가 136-7번지
9479	551837.95	200707.97	451532.10	200637.09	중구 을지로7가 5-1번지
9480	551817.26	200773.46	451511.41	200702.57	중구 을지로7가 5번지
9481	551665.27	200755.30	451359.41	200684.42	중구 광희동2가 55번지
9482	551694.39	200752.28	451388.53	200681.40	중구 광희동2가 50번지
9483	551747.32	200761.40	451441.47	200690.52	중구 을지로7가 105번지
9484	551784.76	200776.14	451478.92	200705.26	중구 을지로7가 105번지
9485	551755.82	200850.60	451449.98	200779.72	중구 을지로7가 30번지
9486	551694.39	200905.68	451388.56	200834.80	중구 을지로7가 13-1번지
9487	551653.24	200827.32	451347.41	200756.44	중구 광희동2가 179번지
9488	551597.77	200820.37	451291.92	200749.49	중구 광희동2가 159-1번지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489	551544.90	200796.20	451239.05	200725.32	중구 광희동2가 218-4번지
9490	551564.27	200738.49	451258.42	200667.61	중구 광희동2가 277번지
9491	551547.30	200699.65	451241.46	200628.77	중구 광희동2가 299번지
9492	551557.40	200683.96	451251.56	200613.08	중구 광희동2가 310번지
9493	551590.44	200671.24	451284.60	200600.36	중구 광희동2가 319번지
9494	551248.31	201075.18	450942.48	201004.29	중구 신당동 403-17번지
9495	551289.78	200976.05	450983.95	200905.17	중구 신당동 402번지
9496	551348.89	200926.40	451043.05	200855.53	중구 신당동 397-1번지
9497	551422.36	200918.50	451116.53	200847.63	중구 신당동 304-264번지
9498	551524.49	200909.13	451218.66	200838.25	중구 신당동 229-56번지
9499	551669.04	200903.53	451363.21	200832.64	중구 광희동2가 104-2번지
9500	551614.54	201425.81	451308.71	201354.93	중구 신당동 102-1번지
9501	551548.56	201399.28	451242.73	201328.40	중구 신당동 102-6번지
9502	551507.33	201379.51	451201.50	201308.63	중구 신당동 103-1번지
9503	551389.99	201324.81	451084.16	201253.93	중구신당동292-61번지
9504	551373.10	201366.67	451067.27	201295.79	중구신당동290-49번지
9505	551287.98	201325.25	450982.14	201254.37	중구 신당동 292-60번지
9506	551304.90	201283.68	450999.06	201212.79	중구 신당동 292-100번지
9507	551242.03	201255.77	450936.20	201184.88	중구 신당동 292-66번지
9508	551273.55	201171.19	450967.72	201100.30	중구 신당동 304-689번지
9509	551340.53	201218.78	451034.70	201147.89	중구 신당동 304-403번지
9510	551383.10	201164.93	451077.26	201094.04	중구 신당동 304-370번지
9511	551452.14	201207.66	451146.31	201136.77	중구 신당동 304-30번지
9512	551436.10	201235.51	451130.27	201164.62	중구 신당동 241-60번지
9513	551414.66	201272.28	451108.83	201201.39	중구 신당동 300-6번지
9514	551493.27	201320.08	451187.44	201249.19	중구 신당동 304-788번지
9515	551545.85	201330.70	451240.02	201259.81	중구 신당동 302-4번지
9516	551729.79	201316.46	451423.96	201245.58	중구 무학동 50-1번지
9517	551663.11	201300.99	451357.29	201230.12	중구신당동247-74번지
9518	551648.24	201341.13	451342.42	201270.26	중구 무학동 50-5번지
9519	551571.46	201311.20	451265.65	201240.33	중구 무학동 38번지
9520	551596.43	201277.71	451290.62	201206.83	중구 신당동 241-102번지
9521	551672.69	201197.87	451366.89	201127.00	중구신당동235-2번지
9522	551713.59	201195.74	451407.79	201124.85	중구신당동248-51번지
9523	551705.81	201141.02	451400.00	201070.13	중구신당동248-20번지
9524	551698.60	201053.47	451392.78	200982.58	중구신당동248-50번지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비고
설치일	2017년 9월 28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17호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태평로2가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서소문제2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되었다가,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제2구역에서 변경(통합)된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관련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한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 역	태평로2가, 서소문동 남대문로4가 일대	91,488.5	-	91,488.5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2)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 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합계				91,488.5	71,284.1	10,470.3		
기정	서소문	1-1	서소문동 103일대	2,850.0	2,850.0	-	서울시고시 제191호('83.4.2)	미시행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변경	서소문	17	서소문동 90일대	1,132.3	1,132.3	-	-	시행지구
	서소문	18	태평로2가 330-2일대	1,755.3	1,755.3	-	-	시행지구
기정	서소문	1-2	서소문동 111 태평로2가 310	3,592.6	2,903.1	689.5	서울시고시 제191호('83.4.2)	완료
기정	서소문	2	태평로2가 250	8,128.2	6,595.0	1,533.2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소문	3	태평로2가 150	11,559.7	8,850.0	2,709.7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소문	4	태평로2가 120	7,467.0	5,418.3	2,048.7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소문	5	서소문동 85-3일대	2,918.9	2,444.5	474.4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시행중
기정	서소문	6	서소문동 136	2,561.3	1,990.0	571.3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서소문	7	서소문동 75-95	2,693.5	2,153.4	540.1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서소문	8-1	서소문동 120-14일대	694.0	694.0	-	서울시고시 제591호('84.10.13)	미시행
변경	서소문	8-1	서소문동 120-14일대	621.0	621.0	-	-	시행지구
기정	서소문	8-2	서소문동 120-13일대	1,208.7	977.9	230.8	서울시고시 제591호('84.10.13)	시행중
변경	서소문	8-2	서소문동 120-13일대	1,182.0	958.6	223.4	-	시행중
기정	서소문	8-3	서소문동 120-12일대	1,172.0	1,172.0	-	서울시고시 제591호('84.10.13)	미시행
변경	서소문	8-3	서소문동 120-12일대	799.1	799.1	-	-	시행지구
	서소문	8-4	서소문동 120-35일대	677.5	677.5	-	-	시행지구
기정	서소문	9	서소문동 120-23일대	4,253.0	4,253.0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준치지구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변경	서소문	9	서소문동 120-23일대	4,269.1	4,269.1	-	-	시행지구
	서소문	A1	서소문동 120-21, 120-38	178.2	178.2	-	-	소단위 관리지구
	서소문	A2	서소문동 120-22	205.7	205.7	-	-	
	서소문	A3	서소문동 120-19	199.5	199.5	-	-	
	서소문	A4	서소문동 120-18	355.1	355.1	-	-	
	서소문	A5	서소문동 120-16	579.1	579.1	-	-	
변경	서소문	A6	서소문동 120-15	467.4	467.4	-	-	소단위 관리지구
	서소문	A7	서소문동 120-28	77.4	77.4	-	-	
	서소문	A8	서소문동 120-29	80.7	80.7	-	-	
	서소문	A9	서소문동 120-11	567.9	567.9	-	-	
기정	서소문	10	서소문동 58-7일대	3,850.7	3,850.7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존치지구
변경	서소문	10	서소문동 58-7일대	2,768.1	2,768.1	-	-	시행지구
기정	서소문	11	서소문동 58-9일대	5,422.3	5,422.3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존치지구
변경	서소문	11-1	서소문동 58-9일대	3,897.6	3,897.6	-	-	시행지구
	서소문	11-2	서소문동 58-10일대	1,771.8	1,771.8	-	-	시행지구
기정	서소문	12	서소문동 58-12일대	2,314.0	2,314.0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존치지구
변경	서소문	12-1	서소문동 58-13	1,133.7	1,133.7	-		시행지구
	서소문	12-2	서소문동 58-12	1,171.2	1,171.2	-		시행지구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기정	서소문	13	서소문동 135	4,083.0	3,525.1	557.9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서소문	14	남대문로4가 45외 2	12,683.9	11,561.8	1,122.1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서소문	15	서소문동 60-1일대	1,170.0	1,170.0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존치지구
변경	서소문	15	서소문동 60-1일대	1,170.0	1,170.0	-	-	시행지구
기정	서소문	16	서소문동 75-2일대	1,006.6	1,006.6	-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09.12.24)	미시행
변경	서소문	16	서소문동 75-2일대	1,006.6	1,006.6	-		시행지구
계획기반시설(기존 국공유지 포함)				9,788.6	-	-	-	-

3)지구지정(변경) 사유서

구 분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1-1지구	17지구, 18지구	서소문동 103일대	· 사업시행지구 분할 및 면적 변경	· 기존 도시조직 고려 및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해 사업규모 축소	-
변경	8-1지구, 8-3지구	8-1지구, 8-3지구, 8-4지구	서소문동 120-14일 대	· 사업시행지구 분할 및 면적 변경	· 기존 도시조직 및 소유자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지구 변경	-
변경	8-2지구	8-2지구,	서소문동 120-13일 대	· 사업시행지구 면적 변경 · 공공시설부담 면적 변경	· 도로 선형 정형화를 위해 사업 시행지구 경계조정	-
변경	9지구	9지구, A1~A9지구	서소문동 120-23일 대	· 정비사업 수법 변경 - 일반정비형 ⇒ 소단위정비형 · 사업시행지구 면적 변경	· 기존 도시조직 및 상권특성 유지·강화를 위해 소단위관리 지구로 전환	-
변경	10지구, 11지구, 12지구	10지구, 11-1지구, 11-2지구, 12-1지구, 12-2지구	서소문동 58-7일대	· 정비사업 수법 변경 - 존치 ⇒ 일반정비형 · 사업시행지구면적 변경	· 노후화된 지구의 정비를 위해 사업시행지구로 전환 ·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
변경	15지구	15지구	서소문동 60-1일대	· 정비사업 수법 변경 - 존치 ⇒ 일반정비형	· 노후화된 존치지구 건축물 재 생을 위해 사업시행지구로 전 환	-

나. 도시환경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1,488.5	-	91,488.5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2,606.8	감) 2,402.4	20,204.4		22.1	-
	도 로		20,437.7	감) 2,611.7	17,826.0		19.5	-
	공 원		398.4	증) 40.6	439.0		0.5	-
	주차장		1,421.0	감) 1,421.0	-		0.0	-
	공공공지		-	증) 1,095.4	1,095.4		1.2	-
	공공청사			증) 834.2	834.2		0.9	-
	보행자 전용도로		349.7	감) 349.7	-		0.0	-
획지	소 계		68,881.7	증) 2,402.4	71,284.1		77.9	-
	일반 정비형	1-1지구	2,850.0	증) 37.6	17지구	1,132.3	1.2	시행지구
					18지구	1,755.3	1.9	시행지구
		1-2지구	2,903.1	-	1-2지구	2,903.1	3.2	완료
		2지구	6,595.0	-	2지구	6,595.0	7.2	완료
		3지구	8,850.0	-	3지구	8,850.0	9.7	완료
획지	일반 정비형	4지구	5,418.3	-	4지구	5,418.3	5.9	완료
		5지구	2,444.5	-	5지구	2,444.5	2.7	시행중
		6지구	1,990.0	-	6지구	1,990.0	2.2	완료
		7지구	2,153.4	-	7지구	2,153.4	2.4	완료
		8-1지구	694.0	감) 73.0	8-1지구	621.0	0.7	시행지구
		8-2지구	977.9	감) 19.3	8-2지구	958.6	1.0	시행중
		8-3지구	1,172.0	증) 304.6	8-3지구	799.1	0.9	시행지구
					8-4지구	677.5	0.7	시행지구
		9지구	4,253.0	증) 16.1	9지구	4,269.1	4.7	시행지구
		10지구	3,580.7	감) 812.6	10지구	2,768.1	3.0	시행지구
		11지구	5,422.3	증) 247.1	11-1지구	3,897.6	4.3	시행지구
					11-2지구	1,771.8	1.9	시행지구
		12지구	2,314.0	감) 9.1	12-1지구	1,133.7	1.2	시행지구
					12-2지구	1,171.2	1.3	시행지구
		13지구	3,525.1	-	13지구	3,525.1	3.9	완료
		14지구	11,561.8	-	14지구	11,561.8	12.6	완료
		15지구	1,170.0	-	15지구	1,170.0	1.3	시행지구
		16지구	1,006.6	-	16지구	1,006.6	1.1	시행지구
		소단위 정비형 (소단위 관리지 구)	-	-	증) 2,710.9	A1지구	178.2	0.2
	A2지구					205.7	0.2	-
	A3지구					199.5	0.2	-
	A4지구					355.1	0.4	-
	A5지구					579.1	0.6	-
	A6지구					467.4	0.5	-
	A7지구					77.4	0.1	-
	A8지구					80.7	0.1	-
	A9지구					567.9	0.6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1,488.5	-	91,488.5	100.0	-
일반상업지역	91,488.5	-	91,488.5	100.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미관지 구	중심지 미관지구	중구 태평로 2가 340-6 일대	17,414.58	895	14~22	서울특별시 제1982-164호 (1982.4.22)	-

(2)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방화지구	중구 서소문동 120-23 일대	91,488.5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	35~40	주간선도 로	일반 도로	430	태평로2가 340-6	서소문동 58-26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기정	중로	1	201	20	집산도로	일반 도로	220	태평로2가 277-2	서소문동 58-13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변경	중로	3	-	12	집산도로	일반 도로	72	서소문동 58-12	서소문동 58-13	-	-	-
변경	소로	3	-	6.5~7	특수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175	서소문동 120-35	서소문동 72-4	-	-	-

구분	구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02	20	집산도로	일반 도로	95	태평로2가 161	태평로2가 161-2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기정	중로	2	192	15	집산도로	일반 도로	240	남대문로4가 47-2	서소문동 120-33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변경	중로	2	-	15	집산도로	일반 도로	135	서소문동 120-34	서소문동 72-4	-	-	-
변경	중로	3	-	12	집산도로	일반 도로	78	남대문로4가 47-2	서소문동 120-34	-	-	-
기정	중로	3	211	12~26	집산도로	일반 도로	245	태평로2가 120-2	서소문동 74-2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변경	중로	3	211	12	집산도로	일반 도로	245	태평로2가 120-2	서소문동 74-2	-	-	-
기정	중로	3	212	12	집산도로	일반 도로	45	태평로2가 310-4	태평로2가 116-5	-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2009.12.24)	-
기정	소로	2	1	8~10	집산도로	일반 도로	75	서소문동 90-2	서소문동 111-3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
변경	소로	2	1	8	집산도로	일반 도로	75	서소문동 90-2	서소문동 111-3	-	-	-
기정	소로	2	2	10	집산도로	일반 도로	75	서소문동 120-26	서소문동 60-1	-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2009.12.24)	-
변경	소로	2	2	10	집산도로	일반 도로	63	서소문동 120-17	서소문동 60-1	-	-	-
기정	소로	3	1	4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85	태평로2가 251	서소문동 116-3	-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2009.12.24)	-
변경	소로	3	1	4	특수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85	태평로2가 251	서소문동 116-3	-	-	-
신설	소로	3	-	4	특수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44	태평로2가 330-1	태평로2가 318-1	-	-	-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	6	집산도로	일반 도로	30	태평로2가 318-1	서소문동 89-1	-	-	-

(2)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201	중로 3-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폭원 : 20m ⇒ 12m - 연장 : 220m ⇒ 72m	· 20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의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폭원 축소 및 도로 선형 변경 (공공공지,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변경) · 기존 가로 특성을 반영하여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소로 3-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폭원 : 20m ⇒ 6.5~7m - 연장 : 220m ⇒ 175m · 도로 사용 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중로 2-192	중로 2-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연장 : 240m ⇒ 135m	· 15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의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연장 및 폭원 축소 (일반정비지구,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변경)
	중로 3-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폭원 : 15m ⇒ 12m - 연장 : 240m ⇒ 78m	
중로 3-211	중로 3-211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12~26m ⇒ 12m	· 기결정된 도로부지의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구간 폭원 축소 (공공공지, 일반정비지구로 변경)
소로 2-1	소로 2-1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10m ⇒ 8m	· 도로 선형 정형화
소로 3-1	소로 3-1	· 도로 사용 형태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사용 형태 변경
-	소로 3-	· 소로 신설	· 기존 가로 특성을 반영하여 도로 신설 및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	소로 3-	· 소로 신설	· 사업지구 분할에 따라 원활한 교통을 위한 도로 신설

(3)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명칭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서소문로4가 120-9, 120-10일대	1,421.0	감)1,421.0	-	건설부고시 제428호 (1978.12.29)	공원, 공공청사로 변경

(4) 주차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기확보 기반시설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기결정 주차장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98.4	증) 40.9	439.3	-	-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광장형 도심소공원)	서소문동 116일대	398.4	증) 40.9	439.3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2009.12.24)	-

(2)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소공원	· 면적 소규모 증가	· 도로 선형 조정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3)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증) 1,090.3	1,090.3	-	-
신설	①	공공공지	서소문동 137일대	-	증) 609.0	609.0	-	-
신설	②	공공공지	서소문동 122-1일대	-	증) 481.3	481.3	-	기존 주차장①을 공공공지로 변경

(4) 공공공지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도로 폭원 조정을 통해 휴게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공공지로 전환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보행 결절점에 보행자 휴게공간을 조성 을 위해 공공공지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서소문동 122일대	-	증) 843.2	843.2	-	기존 주차장①을 공공청사로 변경

(2) 공공청사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60이하	600이하	50이하	-

※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3) 공공청사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기결정된 주차장①을 복합공공청사로 변경

4)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일반정비지구	· 1-2, 2, 3, 4, 5, 6, 7, 8-1, 8-2, 8-3, 8-4, 9, 10, 11-1, 11-2, 12-1, 12-2, 13, 14, 15, 16, 17, 18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소단위정비지구	-	660~1,000㎡이하
소단위관리지구	· 서소문동 120-22번지 일대 (A1~A9지구)	660㎡이하

※ 소단위관리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

구 분	지 구	주용도	비 고
①	· 1-2, 2, 3, 4, 6, 7, 13, 14지구	업무시설	완료지구
②	· 5지구	업무시설	시행지구
③	· 8-2지구	숙박시설 (관광호텔)	
④	· 8-1, 8-3, 8-4, 9, 10, 11-1, 11-2, 12-1, 12-2, 15, 16, 17, 18지구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가능	

※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나) 소단위정비·소단위관리지구

(1) 불허용도계획

- 관련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용도 반영

(2) 권장용도계획

- 일반상업지역내 도입가능한 용도 중 주용도 선택적 적용가능
-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로 지정하고, 전층 권장용도 계획을 통해 계획적 개발 유도

구분	지구	주용도	지정용도(저층)	권장용도(전층)	비고
①	소단위정비지구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가로활성화용도 (1종·2종근린생활시설)	· 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
②	소단위관리지구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단, 종교집회장 및 고시원 제외)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노유자시설 : 도심내 업무종사자를 위한 아동관련 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숙박시설 : 도심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소규모호텔 등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건폐율	비 고
일반정비지구	1-2, 2, 3, 4, 6, 7, 13, 14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완료지구
	5, 8-1~8-4, 9, 10, 11-1, 11-2, 12-1, 12-2, 15, 16, 17, 18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층 이하 : 80%, 5층 초과 : 60%	-
소단위관리지구	A1~A9지구	서소문동 120-22일대	80%이하	-

나)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정비지구	1-2, 2, 3, 4, 6, 7, 13, 14지구	-	600	800	α	완료지구
	5, 8-1~8-4, 9, 10, 11-1, 11-2, 12-1, 12-2, 15, 16, 17, 18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600	800	α	-
소단위관리지구	A1~A9지구	서소문동 120-22일대	600	-	α	-

다)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높 이	비 고
일반정비지구	1-2, 2, 3, 4, 6, 7, 13, 14지구	-	90m이하	완료지구
	5, 8-1~8-4, 9, 10, 11-1, 11-2, 12-1, 12-2, 15, 16, 17, 18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0m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A1~A9지구	서소문동 120-22일대	20m이하	-

※ 단, 소단위정비지구는 간선변(20m이상) 등 접도 및 구역별 여건에 따라 심의를 통해 70m이하까지 가능

7) 건축물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완료, 시행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1지구	2,850.0	서소문동 103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미시행
변경	17지구	1,132.3	서소문동 90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변경	18지구	1,755.3	태평로2가 330-2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기정	1-2지구	2,903.1	서소문동 111 태평로2가 310	업무	39.8	949.8	107.7	완료지구
기정	2지구	6,595.0	태평로2가 250	업무	55.0	961.1	110.8	완료지구
기정	3지구	8,850.0	태평로2가 150	업무(판매)	42.2	587.0	104.6	완료지구
기정	4지구	5,418.3	태평로2가 120	업무	41.9	803.0	87.2	완료지구
기정	5지구	2,444.5	서소문동 85-3일대	업무, 근생	52.1	995.9	90.0이하	시행지구
기정	6지구	1,990.0	서소문동 136	업무, 근생	59.8	999.1	95.0	완료지구
기정	7지구	2,153.4	서소문동 75-95	업무, 근생	39.1	667.8	69.0	완료지구
기정	8-1지구	694.0	서소문동 120-14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미시행
변경	8-1지구	621.0	서소문동 120-14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기정	8-2지구	977.9	서소문동 120-13일대	숙박	60 이하	1,100.0 이하	104 이하	시행지구
변경	8-2지구	958.6	서소문동 120-13일대	숙박	61.0	1,120.9	99.8	시행지구
기정	8-3지구	1,172.0	서소문동 120-12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미시행
변경	8-3지구	799.1	서소문동 120-12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변경	8-4지구	677.5	서소문동 120-35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기정	9지구	4,253.0	서소문동 120-23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존치지구
변경	9지구	4,269.1	서소문동 120-23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기정	10지구	3,580.7	서소문동 58-7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존치지구
변경	10지구	2,768.1	서소문동 58-7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기정	11지구	5,422.3	서소문동 58-9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존치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변경	11-1지구	3,897.6	서소문동 58-9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변경	11-2지구	1,771.8	서소문동 58-10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기정	12지구	2,314.0	서소문동 58-12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존치지구
변경	12-1지구	1,133.7	서소문동 58-13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변경	12-2지구	1,171.2	서소문동 58-12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기정	13지구	3,525.1	서소문동 135	업무	51.8	1,074.7	107.5	완료지구
기정	14지구	11,561.8	남대문로4가 45외 2	업무	47.9	629.2	76.2	완료지구
기정	15지구	1,170.0	서소문동 60-1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존치지구
변경	15지구	1,170.0	서소문동 60-1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기정	16지구	1,006.6	서소문동 75-2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미시행
변경	16지구	1,006.6	서소문동 75-2일대	-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나) 소단위관리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변경	A1지구	178.2	서소문동 120-21, 120-38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A2지구	205.7	서소문동 120-22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A3지구	199.5	서소문동 120-19	-	80이하	600/-/α	20이하	-
기정	A4지구	355.1	서소문동 120-18	-	80이하	600/-/α	20이하	-
기정	A5지구	579.1	서소문동 120-16	-	80이하	600/-/α	20이하	-
기정	A6지구	467.4	서소문동 120-15	-	80이하	600/-/α	20이하	-
기정	A7지구	77.4	서소문동 120-28	-	80이하	600/-/α	20이하	-
기정	A8지구	80.7	서소문동 120-29	-	80이하	600/-/α	20이하	-
기정	A9지구	567.9	서소문동 120-11	-	80이하	600/-/α	20이하	-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 계선	일반정비 지구	· 서소문로, 통일로 : 3m · 세종대로7길 : 멸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대지경계선에서 5m 지정 · 내부골목길 : 대지경계선에서 1~2m 지정 - 4m 초과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2m 지정 - 4m 이하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지정 · 8-1~8-4지구 : 대지경계선에서 3m 지정	-
	소단위정 비지구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지정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지정 · 내부골목길 :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 (도로 중심으로부터 2m 확보선)	-
	소단위관 리지구	· 세종대로 9길 (A1지구)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정	
건축지 정선	소단위관 리지구	· 세종대로 11길 (A1~A9지구) - 대지경계선을 건축지정선으로 지정 - 대지전면폭원의 2/3이상 접도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일반정비지구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따름	
	소단위정비지구	· 조성위치 - 보행결절점 및 간선가로변	

다) 건축물 형태 및 외관

(1) 규제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사선절제형 또는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옥탑층 노출금지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 외부노출 금지	-
건축물 방향성	구역전체	·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도록 배치하여 가능한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배치	-
저층부 외관	구역전체	· 보행친화적인 저층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료, 색채를 이용한 시각분절(3층이하 저층부 분리) · 저층부 개방형 입면 조성	-
진입구 처리	구역전체	· 건축물 주 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재료 및 색채	구역전체	·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금속, 타일, 반사유리)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2) 권장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 권장 ·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사용 권장 · 저층부의 경우 재질감이 느껴지는 소재사용 권장	-

9)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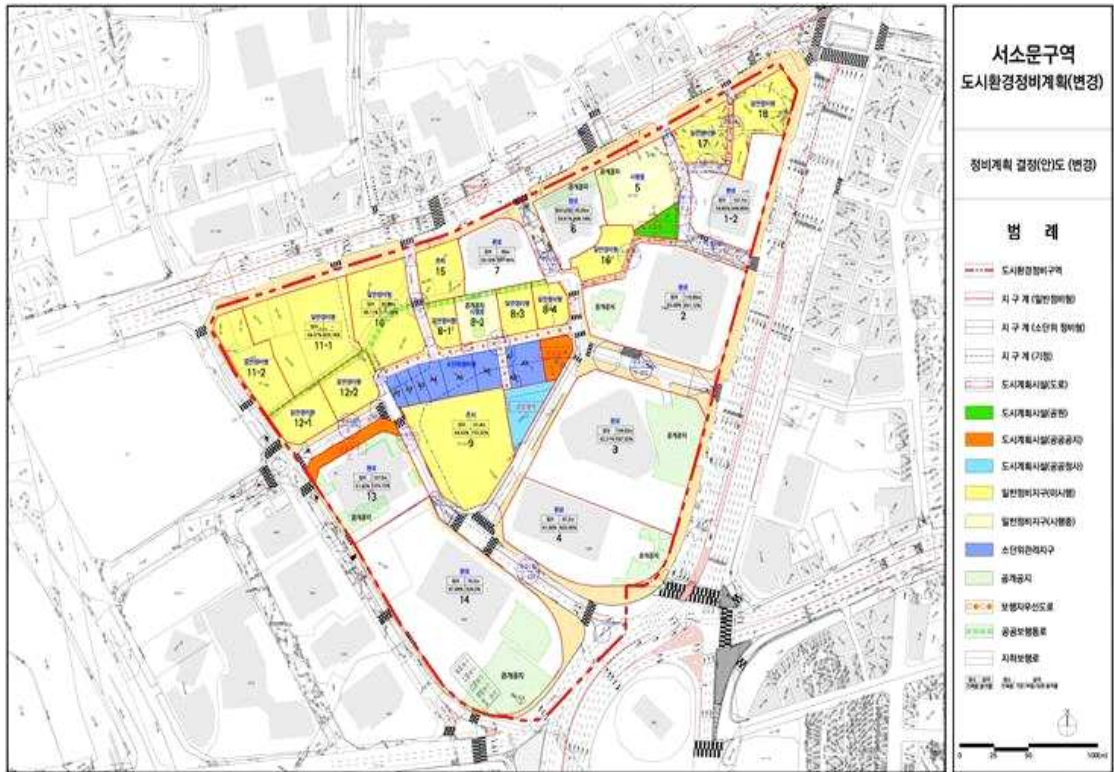
- 당초 서소문구역 평균 부담률 유지 : 13.78% 이상
- 기반시설 계획조정으로 축소된 부담량은 건축 시설물로 기부채납
 - ※ 일반정비지구와 소단위정비지구는 정비사업시행 시 정비기반시설 부담(13.78%이상) 의무
 - ※ 소단위관리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획지별 필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

10)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 정비계획결정(안)도 (변경) >



※ 동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다. 기 타

- 1) 공람기간 : 2017.10.18. ~ 2017.11.17. (30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4)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18호

양동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우리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양동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관련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한 양동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양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가 395일대	91,872.5	-	91,872.5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2)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합 계				91,872.6	70,259.4	17,224.6	-	-
기정	양동	1	남대문로5가 581번지	5,176.0	3,823.1	1,352.9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양동	2	남대문로5가 631번지	6,827.4	5,435.4	1,392.0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양동	3	남대문로5가 827번지	7,446.1	5,346.5	2,099.6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양동	4-1	남대문로5가 500번지	3,592.9	2,429.4	1,163.5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양동	4-2 ·7	남대문로5가 395번지일대	27,145.7	20,350.7	6,795.0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시행중
기정	양동	5	남대문로5가 267번지	8,668.8	6,107.1	2,561.7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기정	양동	6	남대문로5가 526번지	3,835.8	3,081.4	754.4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변경	양동	6	남대문로5가 526번지	3,835.5	3,081.1	754.4	-	완료
기정	양동	8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4,827.0	4,827.0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존치지구
변경	양동	8-1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4,134.8	3,740.4	394.4	-	시행지구
	양동	8-2	남대문로5가 535번지 일대	2,387.2	1,676.1	711.1	-	시행지구
기정	양동	9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12,888.0	12,888.0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존치지구
변경	양동	9-1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10,583.4	10,583.4	-	-	존치지구
	양동	9-2	남대문로5가 567번지 일대	3,013.4	3,013.4	-	-	존치지구
	양동	9-3	남대문로5가 575번지	97.2	97.2	-	-	소단위 관리지구
	양동	9-4	남대문로5가 555번지	97.1	97.1	-	-	소단위 관리지구
	양동	9-5	남대문로5가 554번지	96.9	96.9	-	-	소단위 관리지구
	양동	9-6	남대문로5가 542번지	178.6	178.6	-	-	소단위 관리지구
기정	양동	10	남대문로5가 544번지 일대	2,099.0	2,099.0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미시행
변경	양동	10	남대문로5가 544번지 일대	2,099.0	2,099.0	-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신설	양동	11	남대문로5가 580번지	704.9	704.9	-	-	소단위 정비지구
신설	양동	12-1	남대문로5가 620번지	105.1	105.1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2	남대문로5가 621번지	128.9	128.9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3	남대문로5가 622번지	741.5	741.5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4	남대문로5가 623번지	150.8	150.8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5	남대문로5가 624번지	69.7	69.7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6	남대문로5가 625번지	110.8	110.8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7	남대문로5가 626번지	92.3	92.3	-	-	소단위 관리지구
계획기반시설(기존 국공유지 포함)				4,388.6	-	-	-	-

3) 지구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6지구	6지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 사업지구 획지면적 변경	· 획지면적 오차정정	-
변경	8지구	8-1지구, 8-2지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일대	· 존치지구, 기결정도로 → 시행지구로 지정	· 현황여건과 소유관계를 고려 하여 획지분할	-
변경	9지구	9-1지구 ~ 9-6지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일대	· 존치지구 → 일부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현황여건(미확보도로부지)고 려 기존 존치지구 일부 소 단위관리지구로 변경	-
변경	10지구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일대	· 미시행지구 → 보존지구(보전정비형)	·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상 근현대건축자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존지구(보전정비형)로 전환	-
신설	공원	11지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일대	· 기결정공원 → 소단위정비지구 전환	· 현황여건을 고려(쪽방 입지) 기결정된 공원부지 중 일부 소단위정비지구로 전환	-
신설	공원	12-1지구 ~ 12-7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일대	· 기결정공원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현황여건을 고려(저층주거 다수밀집) 기결정된 공원부 지 중 일부 소단위관리지구 로 전환	-

나. 도시환경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1,872.5	-	91,872.5	100.0	-
정비기 반 시설 등	소 계	25,484.9	감) 3,871.7	21,613.1	23.5	-
	도 로	22,766.6	감) 4,484.5	18,282.1	19.9	-
	공 원	2,718.3	증) 161.5	2,879.8	3.1	-
	사회복지시설	-	증) 451.1	451.1	0.5	-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획지	소 계		66,387.6	증) 3,871.8	70,259.4		76.5	-
	일반 정비형	1지구	3,823.1	-	1지구	3,823.1	-	완료
		2지구	5,435.4	-	2지구	5,435.4	-	완료
		3지구	5,346.5	-	3지구	5,346.5	-	완료
		4-1지구	2,429.4	-	4-1지구	2,429.4	-	완료
		4-2·7지구	20,350.7	-	4-2·7지구	20,350.7	-	시행중
		5지구	6,107.1	-	5지구	6,107.1	-	완료
		6지구	3,081.4	감) 0.3	6지구	3,081.1	-	완료
		8지구	4,827.0	증) 589.5	8-1지구	3,740.4	-	시행
					8-2지구	1,676.1	-	시행
	10지구	2,099.0	감) 2,099.0	10지구	-	-	-	
	소단위 정비지구	11지구	-	증) 704.9	11지구	704.9	-	-
	소단위 관리지구	9지구	-	증) 469.8	9-3지구	97.2	-	-
					9-4지구	97.1	-	-
					9-5지구	96.9	-	-
					9-6지구	178.6	-	-
		12지구	-	증) 1,399.1	12-1지구	105.1	-	-
					12-2지구	128.9	-	-
					12-3지구	741.5	-	-
					12-4지구	150.8	-	-
					12-5지구	69.7	-	-
					12-6지구	110.8	-	-
					12-7지구	92.3	-	-
	존치지구	9지구	12,888.0	증) 708.8	9-1지구	10,583.4	-	-
					9-2지구	3,013.4	-	-
	보존지구 (보전정비 형)	10지구	-	증) 2,099.0	10지구	2,099.0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1,872.5	-	91,872.5	100.0	-
일반상업지역	91,872.5	-	91,872.5	100.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 시 번 호	지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 일	비 고
기정	1-1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중구 봉래동2가 128 일대	9,921.6 5	678	11~24	-	-
기정	1-1	미관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구 남대문로5 가 432 일대	1,628.4 8	140	12	-	-

(2)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47	방화지구	중구 봉래동2가 12 8 일대	7,009.68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01	10~4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70	양동101-2	양동422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기정	중로	1	21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7	양동737-1	양동34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변경	중로	1	21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81	남대문로5가 500-2	남대문로5가 631-1	-	-	
변경	중로	3	-	13~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9	남대문로5가 631-1	남대문로5가 823	-	-	

변경	소로	2	-	8~10	집산도로	일반도로	54	남대문로5가 823	남대문로5가 611	-	-	
기정	중로	1	212	20	집산도로	일반도로	406	양동310	양동72-2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변경	중로	1	212	20	집산도로	일반도로	152	남대문로5가 823	남대문로5가 521	-	-	
변경	중로	3	-	13	집산도로	일반도로	64	남대문로5가 581-1	남대문로5가 644-2	-	-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일반도로	50	양동552	양동552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일반도로	70	양동552	양동552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기정	소로	2	3	8	집산도로	일반도로	70	양동283	양동285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변경	소로	2	3	8	집산도로	일반도로	90	양동283	양동285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신설	소로	3	-	2~6	집산도로	일반도로	104	남대문로5가 580-1	남대문로5가 579	-	-	
기정	소로	1	-	10.3 (5.0)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810 (4.4)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9호 (2016.5.19.)	7017 서울로

※ ()는 양동구역내 편입되는 폭원, 연장임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1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1)	남대문로5가 526 일대	길이	3.15m	-	3.15m	서울시고시 제2016-139호 (2016.5.19)	-
				폭	6m	-	6m		
				높이 (지표면기준)	4.8~5.8m	-	4.8~5.8m		
				면적	18.3㎡	-	18.3㎡		

※ 연결통로1 : 7017서울로와 양동6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3)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11	중로1-211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연장 : 187m⇒81m	· 20m로 기결정된 도로에 대한 단차 및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구간 폐지 및 폭원 축소 (공원,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변경)
	중로3-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20m⇒13~15m - 연장 : 187m⇒69m	
	소로2-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20m⇒8~10m - 연장 : 187m⇒54m	
중로1-212	중로1-212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연장 : 406m⇒152m	· 20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를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일부구간 폐지 및 폭원 축소 (공원,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변경)
	중로3-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20m⇒13m - 연장 : 406m⇒64m	
소로2-3	소로2-3	· 도로 연장정정 - 연장 : 70m⇒90m	· 도로연장 정정
-	소로3-	· 소로신설 - 폭원 : 2~6m - 연장 : 104m	· 기결정공원 및 도로부지의 소단위관리지구 전환에 따라 현황 도로를 감안한 도로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2,718.3	증) 161.5	2,879.8	-	-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남대문로5가 541-3번지 일대	2,718.3	감) 2,718.3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
변경	①	공원	소공원	남대문로5가 541-3번지 일대	-	증) 2,539.4	2,539.4	-	-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남대문로5가 627번지 일대	-	증) 340.4	340.4	-	-

(2)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기결정 공원 축소 - 위치 : 남대문로5가 541-3번지 일대 - 면적 : 2,718.3㎡ → 2,539.4㎡	· 단차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공원축소(일부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②	공원	· 소공원 신설 - 위치 : 남대문로5가 627번지 일대 - 면적 : 340.4㎡	· 건물 입지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및 도로로 기결정된 부지를 소공원으로 계획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	증) 451.1	451.1	-	-

(2) 사회복지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60이하	600이하	50이하	-

※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3) 사회복지시설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 사회복지시설 신설 : 451.1㎡	· 현재 노인정으로 이용중인 기결정 공 원부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로 반영

4)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획내용
일반정비지구	· 1, 2, 3, 4-1, 4-2·7, 5, 6, 8-1, 8-2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소단위정비지구	· 남대문로5가 618번지 일대 (11지구)	660~1,000㎡이하
소단위관리지구	· 남대문로5가 542번지 일대 (9-3~9-6지구) · 남대문로5가 622번지 (12-1~12-7지구)	660㎡이하
존치지구	· 9-1, 9-2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10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가능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

구 분	지 구	주용도	비 고
①	· 1, 2, 3, 4-1, 5, 6지구	업무	완료지구
②	· 4-2·7지구	숙박, 업무	시행지구
③	· 8-1, 8-2지구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가능	시행지구

※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나) 소단위정비·소단위관리지구

(1) 불허용도계획

- 관련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용도 반영

(2) 권장용도계획

- 일반상업지역내 도입가능한 용도 중 주용도 선택적 적용가능
-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로 지정하고, 전층 권장용도 계획을 통해 계획적 개발 유도

구분	지 구	주용도	지정용도(저층)	권장용도(전층)	비고
①	소단위정비지구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가로활성화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
②	소단위관리지구		(1종·2종근린생활시설)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단, 종교집회장 및 고시원 제외)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노유자시설 : 도심내 업무종사자를 위한 아동관련 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숙박시설 : 도심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소규모호텔 등

(3) 존치지구

구 분	지 구	주 용 도	비 고
①	· 9-1지구	업무	존치지구
②	· 9-2지구	공공업무	존치지구

(4)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 분	지 구	주 용 도	비 고
①	· 10지구	종교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건폐율	비 고
일반정비지구	1, 2, 3, 4-1, 5, 6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완료지구
	4-2·7, 8-1, 8-2지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11지구	남대문로5가 618번지 일대	5층이하 : 80% 5층초과 : 60%	-
소단위관리지구	9-3~9-6지구	남대문로5가 542번지 일대	80%이하	-
	12-1~12-7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		
존치지구	9-1, 9-2지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정비지구	1, 2, 3, 4-1, 5, 6 지구	-	600	800	α	완료지구
	4-2·7, 8-1, 8-2지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11지구	남대문로5가 618번지 일대	600	800	α	-
소단위관리지구	9-3~9-6지구	남대문로5가 542번지 일대	600	-	α	-
	12-1~12-7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				
존치지구	9-1, 9-2지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600	800	α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600	800	α	-

다)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높 이	비 고
일반정비지구	1, 2, 3, 4-1, 5, 6지구	-	90m이하	완료지구
	4-2·7, 8-1, 8-2지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11지구	남대문로5가 618번지 일대	50m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9-3~9-6지구	남대문로5가 542번지 일대	20m이하	-
	12-1~12-7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		
존치지구	9-1, 9-2지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90m이하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90m이하	-

※ 단, 소단위정비지구는 간선변(20m이상)등 접도 및 구역별 여건에 따라 심의를 통해 70m이하까지 가능

7) 건축물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완료, 시행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기정	1지구	3,823.1	남대문로5가 581번지	업무	56.9	978.8	108.7	완료지구
기정	2지구	5,435.4	남대문로5가 631번지	업무	39.2	747.5	98.0	완료지구
기정	3지구	5,346.5	남대문로5가 827번지	업무	47.7	999.0	111.0	완료지구
기정	4-1지구	2,429.4	남대문로5가 500번지	업무	47.0이하	615.0이하	84.0이하	완료지구
기정	4-2·7지구	20,350.7	남대문로5가 653번지 일대	숙박, 업무	59.5	540.0	86.0	시행지구
기정	5지구	6,107.1	남대문로5가 267번지	업무	36.3	601.1	85.0	완료지구
기정	6지구	3,081.4	남대문로5가 526번지	업무	46.0	715.0	72.0	완료지구
변경	6지구	3,081.1	남대문로5가 526번지	업무	60.0	731.0	72.0	완료지구
기정	8지구	4,827.0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업무	60.0	600.0	90.0	존치지구
변경	8-1지구	3,740.4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업무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8-2지구	1,676.1	남대문로5가 535번지 일대	종교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 6지구 소유자의 정비계획변경제안('16.11.18)에 따른 변경

⇒ 완료지구 리모델링 세부기준 적용 (문화시설 214.59㎡도입, 건폐율 46%→60%, 용적률 715%→731%)

■ 6지구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양동구역	3,081.4	-	3,081.4	남대문로5가	업무	46 이하	715 이하	72 이하	-
변경	제6지구	3,081.1	-	3,081.1	526번지	업무	60 이하	731 이하	72 이하	-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 용적률 완화사항					·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리모델링(증축 등) 관리방안 세부기준 적용 - 문화시설 신규도입(214.59㎡)에 따른 용적률 완화(연면적 10% 이내) · 용적률 = 기존용적률 + 완화용적률 - 기존 용적률 : 715% - 완화 용적률 = (용도도입면적 / 대지면적) × 기존용적률 × 보상계수(0.5) $= (214.59\text{㎡}(\text{문화복지시설}) / 3,081.1\text{㎡}) \times 665\% \times 0.5 = 23.15\%$ ▶ 상한용적률 = 715% + 23.15% = 738.15%(계획 731.0% 이하)					

나) 소단위정비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신설	11지구	704.9	남대문로5가 614번지 일대	-	(5층이하) 80이하 (5층초과) 60이하	600/800/α	50이하	-

다) 소단위관리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변경	9-3지구	97.2	남대문로5가 575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9-4지구	97.1	남대문로5가 555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9-5지구	96.9	남대문로5가 554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9-6지구	178.6	남대문로5가 54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12-1지구	105.1	남대문로5가 620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12-2지구	128.9	남대문로5가 62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12-3지구	741.5	남대문로5가 62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12-4지구	150.8	남대문로5가 623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12-5지구	69.7	남대문로5가 624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12-5지구	69.7	남대문로5가 624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12-6지구	110.8	남대문로5가 625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12-7지구	92.3	남대문로5가 626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라) 존치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기정	9지구	12,888.0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업무	62.5	1,030.0	119.0	존치지구
변경	9-1지구	10,583.4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업무	62.5	1,030.0	119.0	존치지구
	9-2지구	3,013.3	남대문로5가 567번지 일대	공공업무	75.5	367.9	119.0	존치지구

마)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기정	10지구	2,099.0	남대문로5가 544번지	종교	44.8	89.0	40.0이하	미시행
변경	10지구	2,099.0	남대문로5가 544번지	종교	44.8	89.0	40.0이하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한계선	일반정비지구	· 한강대로, 퇴계로, 소월로, 소월로2길, 후암로, 8-2 서측도로변 : 3m	-
	존치지구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소단위정비지구	· 11지구 : 대지경계선에서 1m 지정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지정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지정	-
건축지정선	소단위관리지구	· 9-3, 9-4, 9-5, 9-6, 12-1, 12-2, 12-3, 12-4, 12-5, 12-6, 12-7지구 - 대지경계선을 건축지정선으로 지정 (※ 12-3, 12-6지구는 협의를 통해 별도 지정)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일반정비지구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소단위정비지구	· 조성위치 - 보행결절점 및 간선가로변	

다) 건축물 형태 및 외관**(1) 규제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사선절제형 또는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옥탑층 노출금지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 외부노출 금지	-
건축물 방향성	구역전체	·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도록 배치하여 가능한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배치	-
저층부 외관	구역전체	· 보행친화적인 저층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료, 색채를 이용한 시각 분절(3층이하 저층부 분리) · 저층부 개방형 입면 조성	-
진입구 처리	구역전체	· 건축물 주 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재료 및 색채	구역전체	·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금속, 타일, 반사유리)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2) 권장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 권장 ·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사용 권장 · 저층부의 경우 재질감이 느껴지는 소재사용 권장	-

9)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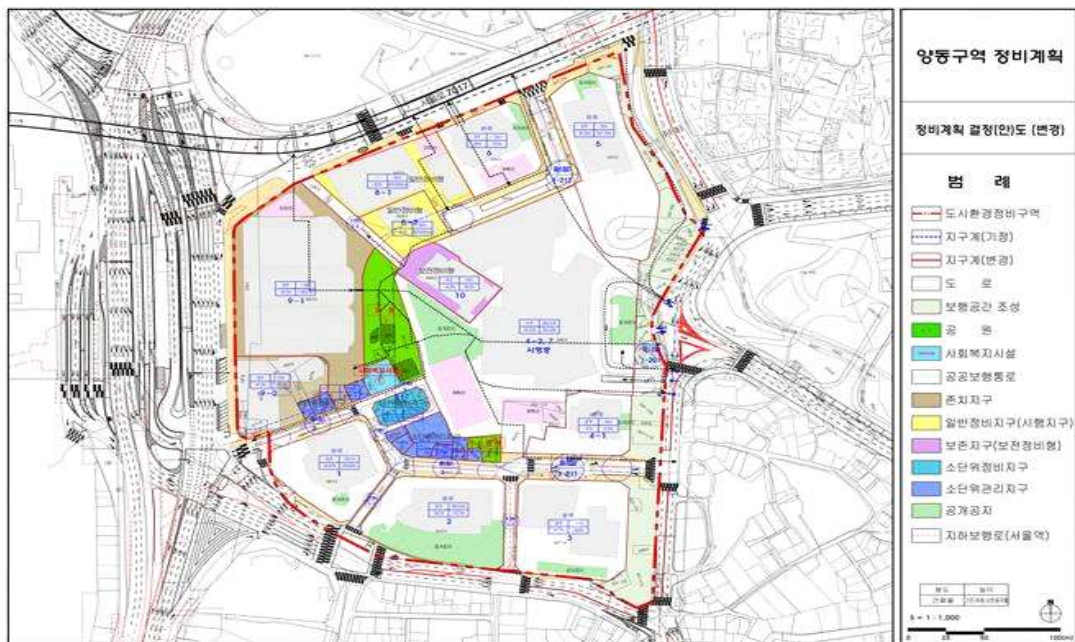
- 양동구역 평균 부담률 유지 : 19.5%이상
- 기반시설 계획조정으로 축소된 부담량은 건축 시설물로 기부채납
 - ※ 일반정비·소단위정비·존차·보존지구(보전정비형)는 정비사업시행 시 정비기반시설 부담(19.5% 이상) 의무
 - ※ 소단위관리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획지별 필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

10)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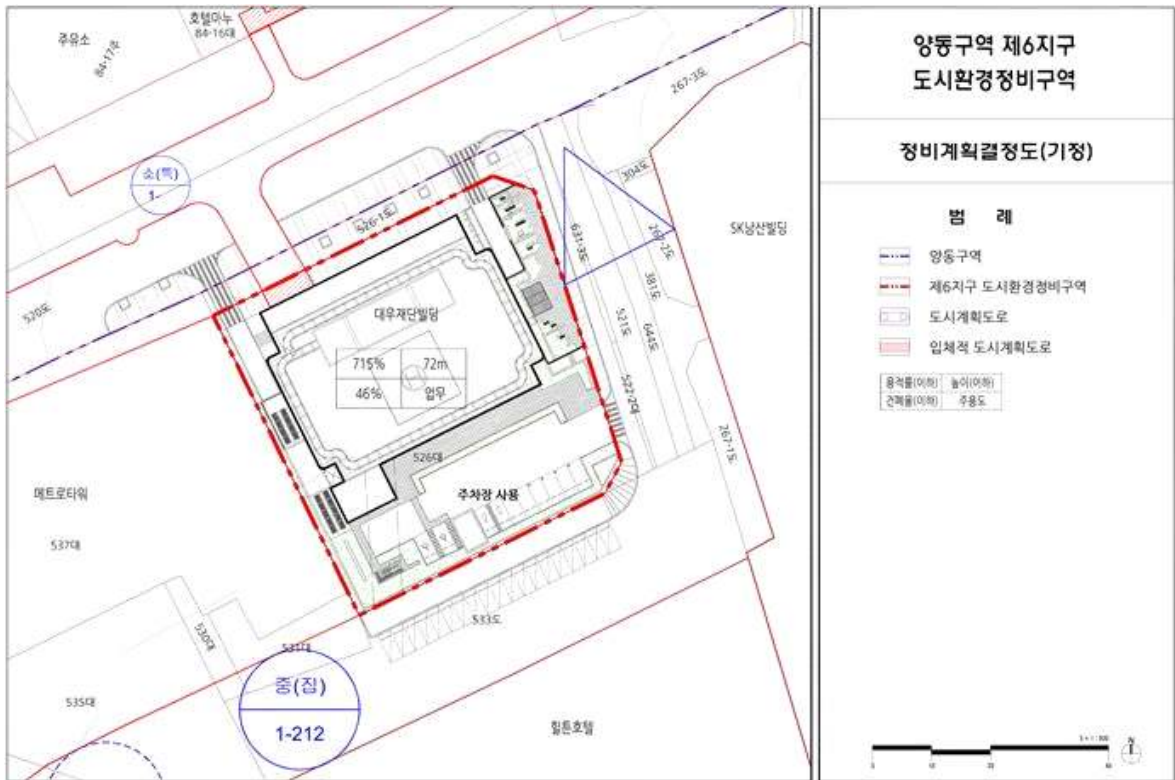
< 정비계획결정(안)도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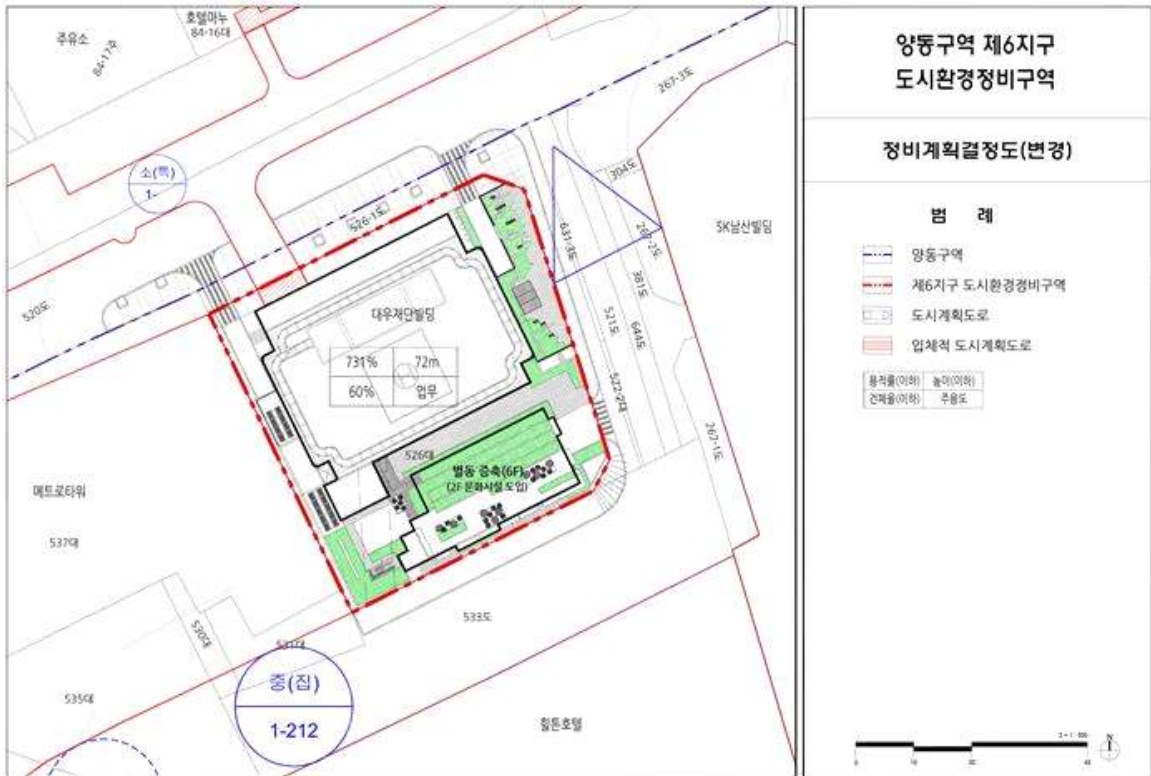
※ 동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6지구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 정비계획결정(안)도 (변경) >



※ 동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 타

- 1) 공람기간 : 2017.10.18. ~ 2017.11.17. (30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6층 (☎02-3396-5774)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23호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10. 18. ~ 2017. 11. 01.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68다80**외 3대
- 소유자명 : 비엠더블***** (주) 외3대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7. 09. 01. ~ 09. 30.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2-3396-6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정지 상태	자동차등 등록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등록번호	소유자주소	사용본거지주소	불법 운행된 상세사유	등록일
등록	68다80**	*****파이 낸셜서비스 코리아(주)	110111 -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101호(회현동2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101호(회현동2가)	리스계약자가 불법으로 대포차량으로 매매 추정	2017.09.15
등록	35나23**	유**	440304 -1*****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저동2 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저동2가)	2017년8월8일부터송춘석(501227-1*****)이 위적시자동차를2017년8월13일13시30분까지위 유진각에게반환하겠다고약속하고몇일간사용을전 재로차량을무상대여한바있는데위송춘석은차량을 빌려간후지끔까지반환하지아니하고차량을무단사 용하면서도로교통법위반(2건)등불법행위를계속하 고있으므로부득이운행정지를요청합니다.	2017.09.13
등록	19주04**	***관광 (주)	110111 -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9길 ***-**(순화동)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9길 ***-**(순화동)	차량소유자인 푸른솔관광(주)는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제공받은후 3개월 연체로 임대차계약서 제3조 다항에 의거 2개월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 및 차량을 강제회수할수 있다. 현재 3개월 연체이고 차량반납을 연락두절및 임차인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주로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을 신청합니다.	2017.09.11
등록	47로42**	***** 벤츠 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주)	110111 -2*****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 *층(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 *층(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상기 차량들은 당사 소유의 리스차량이나 현재 계약이 종료되어 소유자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고 계속하여 운행되고 있어 운행정지를 신청합니다.	2017.09.05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27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일

발 의 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조례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7. 7. 시행)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7. 시행)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2017. 7. 13. 시행)

나. 명칭 변경

- 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안 제13조)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안 제11조 ~ 안 제25조)

다. 디지털광고물 추가

- 기존 네온류, 전광류 외에 디지털광고물 추가

라. 신 설

- 공공목적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안 제6조)
- 불법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안 제11조 제4항)
- 위험 및 불법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안 제21조)

마.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사항 정비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신고대상이므로 삭제(안 제2조)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제3호는 신고없이 변경 할 수 있는 전광류 광고내용 변경을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삭제(안 제4조)
- 제8조(주민협회의회의 운영)제2항제3호의 주민협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9조)
- 제8조(주민협회의회의 운영)제4항의 주민협회의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 제출 의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안 제9조)

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 정비

- 제24조(수수료)제2항에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과오납 하거나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예산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7. 10. ~ 11. (20일)
- (2)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자게시대 등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용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11조로 한다.

-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13조로 한다.

-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옥외광고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법. 영 및 시조례”를 “법령 및 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 광고물 등”을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15조제4호(종전의 제14조제4호) 중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 조례 제12조제3항”을 “시 조례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19조로 한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40조제1항”을 “영 제40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10월말까지”를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로, “다음 연도”를 “당해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 같은 조를 제23조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12월말까지”를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2조제5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2조제2항제3호”를 “제23조제2항제3호”로 하여 같은 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25조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론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9만원
- 3.6㎡ 이상 4.0㎡ 이하	69만원
- 4.1㎡ 이상 4.5㎡ 이하	85만원
- 4.6㎡ 이상 5.0㎡ 미만	99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9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9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9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9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애드벌론 및 건물 4층 이상 의
벽면이용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9만원
- 21.1㎡ 이상 30.0㎡ 이하	239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9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69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89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99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론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4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연면적 10㎡ 이하	200만원
- 연면적 11㎡ 이상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9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 및 조례 제개정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 위	기 준	수 수 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일반 벽면 이용 간판	개 ㎡	· 6제곱미터이하 ·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1,500
나. 건물 4층이상의 벽면이용간판	개 개 개 ㎡	· 5제곱미터이하 ·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 20,000 40,000 4,000
2. 돌출간판	개 개 개 ㎡	· 1제곱미터이하 ·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이하 ·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0,000 20,000 30,000 2,000
이 · 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 · 약국 표지등	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것 에 한함)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나. 내용변경	개	· 해당 광고물(벽면 · 지주)에 준함	5,000
4. 옥상간판	개 개 개 ㎡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 100,000 200,000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개 개 ㎡ ㎡	· 1제곱미터이하 ·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의 면적 ·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 10,000 20,000 2,000 4,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 위	기 준	수수료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개	· 지주이용광고물에 준함 · 옥상광고물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m ² 개	· 1제곱미터이하 ·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 20개이하 · 20개초과 매20개까지 가산	3,000 1,000 15,000 10,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개	· 5제곱미터이하 · 5제곱미터초과	15,000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 항공기	대 대 m ²	· 1.5제곱미터이하 ·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0 2,000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취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m ² 개 개	· 20제곱미터이하 ·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20,000 1,000 2,000 10,000
14. 벽보	매	· 20매이하 · 20매초과 50매이하 ·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	5,000 10,000 10,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 위	기 준	수수료
15. 전단	매	· 매1,000매까지	10,000
16. 전자게시대		· 지주이용간판 수수료의 2배를 적용	
17.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	건	·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5,000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자치구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5. 기타 광고물		· 깃발이용광고물 :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 기타종류의 광고물 :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 수수료의 계산방법

(1)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이하는절사)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에는 계산된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3)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전광판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4)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6)연립광고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2분의1을 경감한다.

(7)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검사 수수료(제25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 분	단 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4층이상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22,000
		개	·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5,000
		m ²	· 연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개	·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15,000
		개	·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2,000
		m ²	· 연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15,000
		개	·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2,000
		m ²	·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
4. 현수막게시시설		개	·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22,000
		개	·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터이하	45,000
		m ²	· 연면적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00

※ 수수료의 산정방법

(1)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 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3) 그 밖에 산정방법은 별표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9만원
- 2.4㎡ 이상 2.6㎡ 이하	69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4만원
- 3.8㎡ 이상 4.4㎡ 이하	28만원
- 4.5㎡ 이상 5.0㎡ 미만	34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8.0㎡ 이하	69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9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 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가. 1회 위반한 경우		4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u>	<u>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	

<u>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u> <u>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u> <u>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u> <u>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u> <u>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u> <u>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u> <u>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u> <u>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u>	<u>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u>
---	---

<u>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u> ③ (생략) 1. (생략) <u><신설></u> 2. (생략)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③ (생략)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생략) 1.~ 2. (생략) 3. <u>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u>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u>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u>	<u>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u> ③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u>시 조례</u>”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u>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u> 3.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u>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u>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	---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 6. (생략) <신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 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 이 정 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u>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u>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 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 다. 1. ~ 2. (생 략) <u>제7조(자율관리협정)</u>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 5. (생 략) <u>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u>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생 략)	<u>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u> ----- -----. 1. ~ 2. (현행과 같음) <u>제8조(자율관리협정)</u>----- ----- -----. 1. ~ 5. (현행과 같음) <u>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u>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u>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u> 2. (생 략) 3. <u>주민협회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u> 4. ~ 7. (생 략) ③ (생 략) ④ <u>주민협회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 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u> <u>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 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 영한다.</u> 1. ~ 3. (생 략)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 원</u> 2. (현행과 같음) 3. -----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 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 임한다.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u>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u>제8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 5. (생략) <u>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u> ① 구청장은 <u>제9조</u>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u>광고업자</u>에 대해서는 <u>우수광고업자</u>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생략) <u><신설></u> <u>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u> ① ~ ③ (생략) 1. ~ 3. (생략) <u>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u>	----- <u>제9조</u> ----- --. 5. (현행과 같음) <u>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u> ① ----- <u>제10조</u>----- -----. ② ----- 법 ----- -----<u>광고사업자</u>----- <u>광고사업자</u>-----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u>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u> ① <u>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	--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옥외광고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	---

<신 설>	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신 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⑧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u>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u> ① (생 략) 1. <u>법. 영 및 시 조례에서</u>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u>심의위원회의 심의를</u>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3. (생 략)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거나 <u>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u> 관한 사항 5. ~ 8. (생 략) ② (생 략) 1.~ 2. (생 략) ③ <u>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u> ④ <u>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⑤ (생 략) <u>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u>	<u>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u> ① (현행과 같음) 1. <u>법령 및 시조례에서</u>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u>심의위원회의 심의를</u>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거나 <u>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u> 관한 사항 5.~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⑤ (현행과 같음) <u>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u> -----. 1. ~ 3. (현행과 같음)
---	--

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 략)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u>중구 시설관리공단</u> 5. (생 략) <u>제15조</u>(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제16조</u>(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생 략) <u>제17조</u>(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⑤ (생 략) <u>제18조</u>(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u>시 조례 제12조제3항</u>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4. -----<u>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u> 5. (현행과 같음) <u>제16조</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제17조</u>(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제18조</u>(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제19조</u>(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u>시 조례 제12조</u>----- ----- -----. ② <u>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
---	--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u><신 설></u> ② <u>현수막 지정게시대</u>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u>제19조</u>(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u>제40조제1항</u>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1. ~ 4. (생략) ③ ~ ④ (생략) <u><신 설></u> <u>제20조</u>(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u>제43조제1항</u>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u>현수막 지정게시대</u>----- -----. <u>제20조</u>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u>제40조</u>----- -----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u>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u>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u>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u>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u>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u>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u>제2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u>----- -----. <u>제23조(옥외광고사업-----)</u> ----- 광고사업----- -----. ②----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 ---- ----- 당해 연도의 ----- -----.
--	--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 ⑦ (생략) 1. ~ 4. (생략) <u>제23조(교육의 위탁 등)</u>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u>옥외광고업</u>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u>옥외광고업</u>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u>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제24조(교육의 위탁 등)</u> ①-----<u>옥외광고사업</u>----- -- ----- ----- ----- ----- ----- -----. ②-----<u>옥외광고사업</u>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u>제23조제2항에</u> ----- ---
--	--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u>12월말까지</u>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교육실시 3개월전까지</u> ---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u>제22조제5항의</u>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 <u>제23조제5항의</u> --- -----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u>제22조제2항제3호</u>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 ----- ----- -<u>제23조제2항제3호</u>----- -----.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u>제24조(수수료)</u>	<u>제25조(수수료)</u>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u>옥외광고업</u>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u>옥외광고사업</u>-----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	② ----- ----- ----- -----<u>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u> 1. <u>과오납한 경우</u> 2. <u>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u>

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u>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
③ (생략)	3. <u>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1. ~ 7.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u>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8. (현행과 같음)
	<u>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u> ----- ----- --.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46호, 2017.7.13., 일부개정]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
 -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